

<과제신청 기본사항 관련 FAQ>

Q1-1.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공고의 RFP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'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'을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세 부분야(신진, 심화, 리더)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며, 신진-심화-리더 단계를 기준으로 연구 성장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으로 심화 단계 참여한 연구자에게 이후 신진 단계로 하향하여 추가 지원하지 않습니다. (신진 참여 후 심화 단계 또는 리더 단계 신청 가능하나 리더 단계 후 신진 또는 심화 단계 신청은 불가합니다.)

▶ RFP 특기사항

- (중복신청 제한) 주관연구책임자는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세부분야(신진, 심화, 리더) 중 1개 분야에만 신청가능하며, 중복신청 시 사전탈락 대상으로 간주함

- 또한, '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'과 '의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'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▶ RFP 지원대상

- 과제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 -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/글로벌 공동연구 사업 또는 유사 연수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
- K-Medi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'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양성' 과제 수행 중인 자는 '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' 또는 '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'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▶ RFP 지원대상 (2023년 K-Medi융합인재양성사업-현장수요연계형글로벌인재육성)

- 과제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 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
- (특기사항-1.공통사항) 국외 연구기간에는 해당 과제 참여율 100% 필수

- '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'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책임자의 경우 동일한 연구주제로 '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'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주제일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 (근거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

- 연구개발과제의 유사·중복성 및 차별성을 검토하여 심의

- K-Medi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'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양성'은 '의과학자 글로벌 연수'와 유사 연수과제로 간주하여 중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▶ RFP 지원대상

- 과제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**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**
 -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과학자 양성 사업/글로벌 공동연구 사업 또는 유사 연수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
Q1-2. 과제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- 과제구성 요건은 공고안내서의 RFP 과제구성 요건(1페이지) 및 사업 RFP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Q1-3. 동일 연구개발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**법인번호 기준으로** 구분하며,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도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**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**
(동일 법인번호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장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참고
 - ※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,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(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)

Q1-4.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기업의 연구개발기관 자격은 공고안내서(4페이지)의 기준을 따라 연구개발전담 부서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,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원 가능합니다. 또한, 기업이 공동,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.
 - ※ 기업부설연구소란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함

Q1-5. 기업 참여 시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제약조건이 있나요?

-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, 과제신청 시 신청자격 적정성 검토 항목에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하고 있으며, 관련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Q1-6.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종전의 참여율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고, 현재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(참여율 개념 폐지)
-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**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에 한하여 연평균 총 인건비 계상률이 1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** 관리해야 하며, 그 외의 연구기관은 **동시 수행 연구과제 수(3책5공)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 인건비 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** 따라서, 과제를 2개 이상 수행하는 경우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의 총 합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합니다.

Q1-7. 과제신청 완료 이후 수정이 가능한가요?

- 과제신청 마감 전까지는 신청완료 이후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담당자(주관 연구개발기관) 권한으로 완료 취소 이후 수정이 가능하며, **과제신청전산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** 또한, 완료 취소한 과제를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기간 내 과제신청 완료 및 기관인증 완료를 하셔야 과제가 접수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1-8. 과제신청 마감 이후 신청 완료된 과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
- 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과제신청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1-9.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※ (참고)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
- 3책 5공 기준과 관련하여 혁신법에 의거하여 종료예정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유예적용이 가능하며, 별도의 추가 유예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▶ (근거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28., 2022. 12. 6., 2024. 2. 6.>
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
-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비를 부담 시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최대 4책 6공까지 가능합니다.

▶ (근거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

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6.>

Q1-10. 과제구성요건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필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반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전산상 추가 설정해야 하며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적정성 검토, 연구개발비 등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.

※ 전산 미설정시 사전검토 탈락

<제안요청서 과제 신청 관련 FAQ – 의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>

Q2-1. 학위취득 경과 기간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?

- 학위취득 경과 기간 산정 기준 시점은 RFP에 따른 해당 단계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산정합니다.
- 즉, 과제 신청 접수마감일(신진- 02.29. 심화/리더- 05.09.) 기준으로 학위 취득 경과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Q2-2. 한 개 지원분야에 동일 연구책임자가 다른 주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불가합니다. 연구책임자는 한 개 지원분야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또한, 연구책임자는 지원분야(신진, 심화, 리더) 중 1개 분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▶ RFP 특기사항

- (중복신청 제한) 주관연구책임자는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세부분야(신진, 심화, 리더) 중 1개 분야에만 신청가능하며, 중복신청 시 사전탈락 대상으로 간주함

Q2-3. 학위증명서에 기초의학 등을 이수한 전공이 미표기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- 수기로 세부 전공이 표기된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졸업한 대학원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또한, 제출한 학위 논문을 통해 전공분야를 평가 시 판단하게 됩니다.(증빙자료 첨부 목록 참고)

▶ RFP 지원대상

-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박사학위의 세부전공이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, 공학, 이학임을 증빙하여야 함(세부전공 표기된 학위증명서, 최종학위 논문 초록 제출)

Q2-4.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나요?

-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과제를 활용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동 과제에서 연수 관련 해외 체재비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국내에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기 출장이 아닌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또는 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과제가 종료된 후 해외 연수를 시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.

▶ RFP 특기사항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이후 해외연수, 출장,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구 공백 발생 시 특별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
- ▶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p.79)
 -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과 상호 협의(실무 상 승인)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임
 - 연구책임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-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내 해외 연수, 출장, 파견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(15일 이내 단기 출장 제외)

※ 협약 시의 연구계획서에 없는 6개월 이내 해외 체류 및 해외 연구계획 내용 등이 추가 또는 변경이 된다면 협약변경 승인사항인 '연구개발 내용 변경'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p.65/2.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)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 개발사업 가이드라인(p.85/3. 협약변경)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2-5. 적용가점은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?

- '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지원-전일제 박사학위 과정' 수행 경험자인 경우 수료증을, 최우수 등급인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 수료 후 성과지표 달성을 완료한 자에 한함(중도포기자, 성과미 달성자, 최종평가 50점이하 연구자는 가점 해당 없음)

※ 제출된 증빙은 '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'담당자를 통해 가점 해당 여부 확인함

- '박사 후 연구성장지원-신진 분야', 'K-Medi-디딤돌 분야' 수행 경험자인 경우 협약서 첫째 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▶ RFP 선정평가 기준

- (신진) 연구책임자가 '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사업(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)' 수행 경험자인 경우 가점(0.5점),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인 경우 가점(1점) 적용
- (심화) 연구책임자가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신진분야(K-Medi 디딤돌 분야 포함) 수행 경험자인 경우 가점(0.5점),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경우 가점(1점) 적용

<제안요청서 과제 신청 관련 FAQ -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>

Q3-1. 해외 연수는 최소 2년 이상인가요? 분할이 가능한가요?

- 협약 기간 중 해외 연수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, 연구 중인 과제 특성 및 연수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1회에 한해 분할 연수는 가능합니다.
- 계획서 접수 시 연수분할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거나 수행 중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전 확인 및 협약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▶ RFP 특기사항 및 기타 주의사항

- (해외연수기간) 최소 2년 이상 연수 시행(1회에 한하여 분할 연수 가능)
- 협약 개시일 이후 출국, 협약 종료일 전 귀국을 원칙으로 함(협약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출국할 것을 권장함)
- 해외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귀국의무 필수(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필수, 미준수 시 연구개발비 전액 환수)
- 과제 수행 중 협약변경(연구목표, 계획, 기간 등의 변경)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

Q3-2. 해외 연수기간 중에는 인건비 계상율을 반드시 100%로 수행하여야 하나요?

- 동 과제는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인재양성 과제로 해외 연수 기간 중에는 인건비 계상율 100%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타 과제와 병행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 계상율을 100%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
▶ RFP 특기사항

- 해외 연수기간 동안 동 과제의 인건비 계상율은 100%로 하여야하며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130%로 계상하여야 함

Q3-3. 해외 연수기관 및 연구 멘토와 협의 중인 경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- 과제 신청 시점에 연수기관 및 해외 연구 멘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수정계획서 제출 시(협약 전)에는 확정된 연수기관 및 멘토를 연수활동 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.(증빙자료 첨부 목록 참고)

▶ RFP 특기사항

- 글로벌 연수를 위한 희망 세부 연구분야 및 연수대상 국가/교류협력 기업 또는 기관을 반드시 명시
-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수대상 기관에 각 1명씩 멘토* 지정
 - * 멘토는 연수자 및 연수비 전반에 대한 관리·운영 및 과제수행 관련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 지정
- ※ 과제 신청 시 해외 연수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기관 정보로 기재하고, 협약 전까지 연수기관 및 멘토에 대해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 시 협약 불가)

Q3-4. 석·박사통합과정인 경우 수료생도 지원 가능한가요?

- 석·박사통합과정에서 5학기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 이상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- 또한,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3-5. 이미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?

-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더라도 국내에 소속기관(공고문 참고)이 있으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. 다만, 선정평가는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되므로 해당일정에 맞춰 귀국이 필요합니다.
- 타 지원과제로 연수를 시행 중에 추가로 연수를 이어서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(유사 연수 지원을 받은 경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)

▶ RFP 지원대상

○ 과제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- 이중국적자, 외국인 또는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
- 보건복지부 또는 타부처 지원 해외연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
 - ※ 단, 과거 유사 연수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연구자 중 최근 2년(2022.1월 이후부터 과제 신청 시까지) 내에는 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없는 경우 과제 신청 가능
- 연구기간과 군전문연구요원(병역특례자)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
-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/글로벌 공동연구 사업 또는 유사 연수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
Q3-6. 연수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력만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주관연구책임자(연수자)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력이어야 하며, 과제 종료 시까지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
- 과제 수행 중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<제안요청서 과제 신청 관련 FAQ – 의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>

Q4-1. 의과학자(연구책임자 외)의 과제 참여 방법은?

- RFP에 명시된 봐와 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외 의과학자 1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, 공동연구 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신진의과학자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※ 의과학자 분류(신진, 리더)의 기준은 '의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'과 동일함

▶ RFP 지원대상(글로벌 공동연구지원)

○ (컨소시엄 구성)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'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

* 주관연구개발기관에는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의 의과학자(MD-PhD) 필수 구성(국내 신진 의과학자(MD-PhD)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연구자 참여 권장)

▶ RFP 지원대상(박사 후 연구성장지원)

○ 국내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보유), 대학,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,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

지원분야	지원대상 요건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신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사면허와 박사학위(MD.-Ph.D.)'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※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심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사면허와 박사학위(MD.-Ph.D.)'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※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리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사면허와 박사학위(MD.-Ph.D.)'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※ 박사학위 취득 이후 1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

○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박사학위의 세부전공이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, 공학, 이학임을 증빙하여야 함(세부전공 표기된 학위증명서, 최종학위 논문 초록 제출)
(임상 전공과목 예시 : 가정의학, 방사선종양학, 비뇨의학, 산부인과학, 소아청소년과학, 외과학, 응급의학, 진단검사의학, 핵의학, 흉부외과학, 내과학, 마취통증의학, 신경과학, 신경외과학, 이비인후과학, 정신건강 의학, 직업환경의학, 성형외과학, 안과학, 영상의학, 재활의학, 정형외과학, 피부과학)

- 복수의 '의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과제'에 신청요건 충족을 위해 동일한 의과학자를 여러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. 사업목적 및 연구주제에 맞게 참여연구원을 구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.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책임자가 다른 복수의 '의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과제'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, 참여연구원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은 주관 연구개발기관 자율사항이지만,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의 지적이 있을 경우 협약 시 참여연구원 구성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Q4-2. 국외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방법은?

- RFP에 명시된 봐와 같이 국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수이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'24.2.6. 시행)에 따라 협약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정보를 추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IRIS 시스템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RFP 지원대상

분류	연구개발기관	연구개발책임자	비고
주관 연구개발기관	국내 연구개발기관 (산·학·연·병)	의사과학자	과제 총괄
공동 연구개발기관	국내외 연구개발기관	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	국외 연구기관 참여 필수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'24.2.6. 시행)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.

▶ (근거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
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4. 2. 6.>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과제 신청 시, 국외 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 외 형태로 제출한 경우 향후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되어야 합니다.

Q4-3. 국제공동연구 과제수행을 위한 지침은?

- '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(가칭)'을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, 공포 후 이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.
- 해당 매뉴얼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법령 및 하위규정(혁신법 매뉴얼 포함)과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」, 「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